

##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한시임기제 5호 채용 공고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한시임기제 5호(5급 상당) 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을 실시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4. 3. 25.

국립통일교육원장

### 1.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 「공무원임용령」
- 「공무원임용시험령」
- 「공무원보수규정」
- 「공무원임용규칙」
-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 2.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임용예정 직 급	인원	시험 방법	담당예정업무	임용일
한시임기제 5호 (통일교육 국제협력 분야)	1명	서류전형 및 면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 통일교육 과정 기획 및 운영</li> <li>○ 글로벌 통일교육 해외 네트워크 관리</li> <li>○ 해외 신진학자 사업 운영</li> <li>○ 해외 전문가 초빙교수 사업 운영</li> <li>○ 영문 홈페이지 모니터링</li> <li>○ 영문 교육자료 검수</li> <li>○ 기타 통·번역 업무 등</li> </ul>	채용 즉시

※ 근무지 :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교육총괄과(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 계약기간 : 임용일부터 2025년 4월 1일까지

\* 한시임기제 공무원은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자로 휴직자의 업무 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임용

※ 근무시간 : 주 35시간 근무(점심시간 제외)

※ 보수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보수 및 수당 지급(<표1> 참조)

<표 1> 국립통일교육원 한시임기제 5호 보수수준

구 분	월 봉급기준액	비 고
한시임기제 5호	2,992,800원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수당 제외 금액

- \* 위 월 봉급기준액은 통상적인 주 40시간을 모두 근무할 경우에 받게 될 월 봉급액으로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함(「공무원보수규정」).
-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3. 응시 요건

#### 가. 기본요건

##### ○ 공통 자격요건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 임용시행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결격사유는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에 의거, 임용시험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당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

○ (성별 및 학력) 제한 없음

-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전형) 시험 예정일 기준 전역이 가능한 자

○ (연령) 18세 이상(2006.12.31. 이전 출생자)에 해당하는 자

○ (국적)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 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함.

**나. 자격요건** (판단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 응시자는 아래의 자격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채용 직급	자격 요건(택1)	
한시 입기제 5호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li> <li>○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li> <li>○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li> </ul>
	학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li> <li>○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li> <li>○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li> </ul>

※ 응시 자격요건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

※ 관련분야 경력은 국제협력 분야 근무경력, 국제기구 근무경력, 영어 통번역 등 관련 근무 경력이며,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함.

※ 관련분야 학위는 영어 통역(번역)학과, 영어영문학과, 영어교육학과, 국제협력학과 및 기타 국제분야 관련 학과임.

**다. 우대요건** (인정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 증빙서류(사본) 미제출시 미인정

○ 관련 분야의 근무경력 연차별 차등 배점

- 응시 자격요건을 충족한 이후 초과되는 근무경력에 대해 평가
  - \* 경력확인을 위해 4대보험 자격득실을 증명·확인하며, 소득금액 증명을 받을 수 있음.

※ 경력의 범위

- ‘경력’은 관련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
-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될 수 있음.
- **시간제 근무경력**은 근무시간(주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일부 경력 인정**
  -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교원 등의 교수시간)에 따라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은 주9시간 기준(예: 4년간 주20시간 근무한 경우 “4년×(20시간/40시간)”에 따라 2년 인정)
-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

○ 영어능력 검정시험 성적 우수자

구 분		상	중	하
토플 (TOEFL)	PBT	630점 이상	590점~629점	567점~589점
	CBT	263점 이상	243점~262점	227점~242점
	IBT	108점 이상	97점~107점	86점~96점
토익(TOEIC)		945점 이상	870점~944점	790점~869점
텡스(TEPS)		900점 이상 (개정 후 525점 이상)	800점~899점 (개정 후 452점 이상)	700점~799점 (개정 후 386점 이상)
플렉스(FLEX)		900점 이상	800점~899점	700점~799점
한국외대 위탁 어학검정		90점 이상	80점~89점	70점~79점

\*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의 외국어능력 검정결과 대비표(별표 4) 적용

○ 한국사능력시험 자격증 소지자

- \* 한국사능력시험 자격증은 가산요건(만점과 개별적으로 적용)으로, △1급은 만점의 3% △2급은 만점의 1% 부여

○ 직무분야 관련 표창·상훈 수상실적

- \*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중앙행정기관장,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장, 광역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장이 수여한 상훈이며, 개인이 수상한 경우에 한함(단체 수상 제외).

## 4. 시험 방법

### ○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
- 응시 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4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 서류전형 기준 : 관련 경력, 학위, 어학성적,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계획서 등

### ○ 2차 시험 :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통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른 평정요소(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기준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5개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 ‘상’의 개수가 많은 자를 선발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 전형(서류 및 면접)을 거쳐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5. 채용 일정

구 분	일 자	주요 내용	비 고
시험계획 공 고	'24.3.25.(월) ~ 4.4.(목)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홈페이지	
응시원서 접 수	4.1.(월) ~ 4.4.(목)	○ 접수방법 : 우편접수 및 방문제출 ○ 접수장소 :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경영지원과 * (01018) 서울 강북구 4.19로 123 (수유동 535-353) 국립통일교육원 경영지원과 인사담당 * 응시번호는 접수 후 개별 통보	문의전화 (02-901-7113)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4.11.(목)	통일부 및 국립통일교육원 홈페이지 게재	
면접시험	4.15.(월)	국립통일교육원 회의실 * 응시표 면접 당일 배부	
최종 합격자 발 표	4.16.(화)	통일부 및 국립통일교육원 홈페이지 게재 * 신원조사 등 행정절차 완료 후 임용 예정	

※ 기관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통일부 및 국립통일교육원 홈페이지에 공지

※ 최종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4.4.1.(월) ~ 4.4.(목)

○ 접수처: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경영지원과 채용담당자  
(01018) 서울 강북구 4.19로 123 (수유동 535-353) 국립통일교육원  
경영지원과 인사담당

○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에 접수처에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인터넷 및 택배,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 불가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임용직급' 및 '응시원서 재증' 글자 표기(예시 : '한시  
임기제 5호(통일교육 국제협력 분야) 응시원서 재증)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1:30~13:30 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하며,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접수 불가함.

- 우편(등기) 접수는 2024.4.4.(목)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를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함.

- 방문접수는 응시자 본인이 직접 접수하여야 함.  
※ 방문 접수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지참
- 응시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람.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각종 공고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 7. 제출 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반드시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2024.4.4.)까지 제출 완료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 ○ 응시원서(별지1호) 1부

- ※ 10,000원 상당의 정부전자수입인지 첨부, 정부전자수입인지는 접수처(통일부 국립 통일교육원 경영지원과)에서는 발급하지 않으므로 가까운 우체국,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www.e-revenuestamp.or.kr](http://www.e-revenuestamp.or.kr)) 등을 통해 발급
- ※ 저소득층(「국민생활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응시수수료를 면제함(증빙서류 반드시 제출)

### ○ 이력서(별지 2호), 자기소개서(별지 3호), 직무수행 계획서(별지 4호) 각 1부

### ○ 주민등록 초본 1부

- ※ 남성의 경우 병역 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 개인정보 제공 및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5~6호) 1부

### ○ 경력(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 경력(재직)증명서 미제출시 해당 경력 인정되지 않음.
- ※ 경력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주당 근무시간 표시),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 경력증명서 제출시, 폐업회사의 경우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 증명서(홈택스 발급 가능)' 제출
- ※ 기관의 폐업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예-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등) 및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 증명서' 추가 제출

※ 외국 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 **영어능력 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자격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검정기관별 유효기간 성적으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 점수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함.

○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전공분야 표시)**

※ 해외 학위의 경우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 필요하며, 학위 사본 제출 후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 서류 면접일에 지참 가능

○ **직무분야 관련 표창(상훈) 증빙자료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인정하며 개인성명이 기재된 표창(상훈)에 한정

※ 주최기관 또는 상장수여기관, 수상자 공적 명 등이 기입된 상장 사본 등을 증빙으로 제출

○ **면접일 추가제출 서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근무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의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예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중 1종

- 소득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국세청이 발급한 '소득금액 증명'(경력 확인용)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금액 증명은 무인 민원발급기, 인터넷([www.hometax.go.kr](http://www.hometax.go.kr)),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 8. 기타 사항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 임용시행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 제출된 서류에서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는 합격 또는 임용 취소 가능합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조회) 및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시험일정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계획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변경일정 7일 전 공고 매체를 통해 변경공고할 예정입니다.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등에 대한 채점기준, 채점결과 등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면접자가 요청한 경우 평가결과를 종합한 상·중·하의 개수 공개 가능(단, 평가요소별 상·중·하는 비공개 대상)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 \* 제출된 서류는 최종 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 근무 예정 직위에 대한 직무의 주요내용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역량 등은 붙임의 직무기술서(공고문 10쪽)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 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 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 국민제보

- 채용공고 내용 이외의 사항은 인사관계 법령 및 인사혁신처의 각종 지침에 따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경영지원과 인사담당자 (☎ 02-901-711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직무기술서

직무분야	임용예정 직급(직류)	선발예정인원
통일교육 국제협력 분야	한시임기제 5호	1명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교육총괄과

<b>주요 업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 통일교육 과정 기획 및 운영</li> <li>○ 글로벌 통일교육 해외 네트워크 관리</li> <li>○ 해외 신진학자 사업 운영</li> <li>○ 해외 전문가 초빙교수 사업 운영</li> <li>○ 영문 홈페이지 모니터링</li> <li>○ 영문 교육자료 검수</li> <li>○ 기타 통·번역 업무 등</li> </ul>
--------------	--

<b>필요 역량</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li> <li>○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조정능력</li> <li>○ (직렬별 역량) 어학(영어) 통·번역 능력, 통일교육 등</li> </ul>
--------------	--

<b>필요 지식</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교육 분야 통·번역을 위한 영어 활용 지식</li> <li>○ 교육학·국제관계학 등 관련 기초 지식</li> </ul>
--------------	---

<b>자격 요건</b>	<b>관련분야 : 통일교육 국제협력</b>	
	<b>경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li> <li>○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li> <li>○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li> </ul>
	<b>학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li> <li>○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li> <li>○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li> </ul>
	<p>[관련학위] 영어 통역(번역)학과, 영어영문학과, 영어교육학과, 국제협력학과 및 기타 국제분야 관련 학과</p> <p>[관련경력] 국제협력 분야 근무경력, 국제기구 근무경력, 영어 통·번역 등</p>	
<b>우대 요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시 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관련분야 근무경력</li> <li>○ 영어능력 검정시험 성적 우수자</li> <li>○ 한국사능력 시험 자격증 소지자</li> <li>○ 직무분야 관련 표창·상훈 수상실적</li> </ul>	

<별지서식 제1호>

## 응 시 원 서

본인은 국립통일교육원 한시임기제 5호 경력경쟁채용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4 년 월 일

국립통일교육원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직급	한시임기제 5호 (통일교육 국제협력)		(한자)
생 일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우 - )		전자 정부수입인지 (구입처 : 우체국)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 응 시 표 (통일부 경력경쟁 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직급	
성 명	(한글)	(한자)	
생 일			
2024 년 월 일 국립통일교육원장 ㉠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당일에 배부합니다.
2.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시험당일은 신분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통일부 운영지원과 안내에 따라 지정된 시간까지 시험장소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 한시임기제 5호(통일교육 국제협력)
2. 응시요건 : 공고문의 응시 자격요건 및 아래 <표 2>를 참고하여  
응시요건 중 반드시 하나를 택하여 표시

※ 응시 자격요건 중복선택, 미선택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응시원서에 기입된 선택표시와 이력서에 기입된 선택표시가 다를 경우, 응시원서를 기준으로 함.

<표 2> 국립통일교육원 한시임기제 5호 응시 자격요건(택1)

<b>경력①</b>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b>경력②</b>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b>경력③</b>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b>학위①</b>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b>학위②</b>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b>학위③</b>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5.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6.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7. 정부수입인지 : 우체국 및 온라인(<https://www.e-revenuestamp.or.kr>) 등  
- 직급별 금액 : 한시임기제 5호(10,000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이력서 작성요령

### 가. 공통사항

-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 응시분야 : 한시임기제 5호(통일교육 국제협력)
- 응시자격요건 : 해당하는 응시자격 1가지 기재(미기재 또는 중복기재시  
요건 불충족 처리)
- 우대요건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 나. 학위

- 응시요건으로 학위가 필요한 경우만 작성
- 전공분야 : **학교명은 기재하지 않으며**, 전공분야 만을 작성
- 학위취득(예정)일 : 학위를 취득한 날을 연, 월, 일로 작성
- 학위종류 : 문학사, 인문학사 등 학위 종류 작성

### 다. 경력사항

- 응시요건 및 우대요건 판단시 활용되므로 **관련분야 경력 모두 작성**
- 근무기관 : 기관명과 부서명 모두 작성
- 근무기간 : 시작일(연, 월, 일) ~ 종료일(연, 월, 일)
- 근무일수 : **근무종료일을 포함한** 재직기간을 연, 월, 일로 작성
- 직위 : (민간) 과장, 팀장, 대리 등의 직위 / (공무원) 5급, 6급 등의 직급
- 근무형태 : 상근, 시간제, 시간강사, 프리랜서 중 선택
  - \* △(상근)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근무자 중 전임근무(주40시간)를 하는 경우 △(시간제) 비 전임 근무자 중 시간이 특정되는 경우, 주 근무시간 표기 △(시간강사) 전임강사가 아닌 경우, 주 강의시간 표기 △(프리랜서) 근무시간이 불확실한 경우
- 담당업무 : 실제로 수행한 업무 상세 작성

<별지서식 제3호>

◎ 자기소개서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미래 전망, 성품, 직장구성원으로 바람직한 태도, 대인관계, 취미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 A4용지 1매 내외로 작성

※ 휴먼명조체 13 Point로 작성

2024. . . 작성자 : (인)

<별지서식 제4호>

◎ 직 무 수 행 계 획 서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시험공고에 명시된 임용예정부서의 담당예정 업무와 연계하여 작성
- ※ A4용지 2매 내외로 작성
- ※ 휴먼명조체 13 Point로 작성

2024. . . 작 성 자 : (인)





